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24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11. 24

라. 상정일자 : 2009. 12. 17 (제178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아시안게임지원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5조제1항)

- 사장, 감사, 이사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상임이사 정수 관련 문구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11조)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 검단신도시개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관련
  -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천억원이며, 이중 실제 투자된 납입자본금은 1조 8,233억원임.

#### <도시개발공사 자본금현황>

(단위:억원)

수권자본금 (A)	납입자본금(B)					追加出資 가능액 (A-B)
	계	현금	현물	채권	채무	
25,000	18,233 (100%)	914 (5.0%)	17,630 (96.7%)	133 (0.7%)	△444 (-2.4%)	6,767

**<도시개발공사 수권자본금 증액현황>**

증액 시기	수권자본금 증액내역	비 고
2003. 3. 1	4,500억원 (최초)	
2007. 5. 14	4,500억원 → 1조원	
2007. 12. 17	1조원 → 2조 5000억원	

- 동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이 5조원으로 증액되어 현금 또는 현물 출자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됨.

**<공사채 승인 심사기준 및 발행한도>**

○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 : 순자산의 10배 이내					
- 행정안전부 실제 승인기준 : 순자산의 4배 이내					
- 도시개발공사 발행한도 추정 <span style="float:right">(단위 : 억원)</span>					
순자산	발행한도(A) (순자산 기준)		既 승인액 (B)	추가 승인가능액 (C = A - B)	
	4배	10배		4배	10배
12,591 (‘08년말)	50,364	125,910	42,853	7,511	83,057
19,056 (‘09년 8월말)	76,224	190,560	42,853	33,371	147,707

- 또한, 공사의 수권자본금이 증액 조정될 경우 시의 신규출자에 대한 계획 및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적정 사업규모 조성 필요성 및 시의 출자계획**

-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42개의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으며, 각종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며 도시개발공사 채무현황(연도별)을 첨부하였음.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임기관련**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사장 임명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 사장을 포함한 이사(비상임이사 포함), 감사 등 모든 임원(당연직 제외)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 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이사회에 관한 삭제 관련(안 제16조)**

- 현행 제1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 제3항 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장은 이사회 소집, 이사회에 감사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 등이 정관에서 정해지게 됨.

○ **기타 수정사항으로**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시의 공사·공단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 내용을 통일할 필요성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는
  - 안 제8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안 제11조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12조제1항 중 “임면하며”를 “임면하되”로 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유천호,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수권자본금 증액(4,500억원→1조원→2조5천억원)이 진행되었음. 이번 회기에 자본금 증액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 시에서 업무를 떠맡다 보니 공사의 업무가 방대하고 가중되고 있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시민의 피해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재개발 사업의 문제로 지역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가난을 대물림 할 수 있음.
  - 시의 공기업업무가 방대하여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사의 사업 및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 2010년도 공사채 발행계획 및 사용용도는?

- 임원면직에 대하여 내용이 없는 사유는?
- 수권자본금 5조원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4조원 정도 되어도 자금의 융통성 순환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임. 법 시행일('09.10.2) 이전에 인천메트로는 개정되었음. 총체적인 공사공단 관리차원에서 공기업민원담당관실에서 보다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임.

### < 답 변 >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도시개발공사사장 김동기, 전략기획실장 송영남
  - 공사에서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 수권자본금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방대하여 수권자본금을 올리게 되었음. 42개 사업은 길게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 공사가 많은 이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있음,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도록 균형 있게 노력할 것임.
  - 재개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할 것이며 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음.
  - 공사채발행은 내년 말쯤 4조 5천억원 정도이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임원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자동 면직되며 임기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안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사업추진을 해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6. 수정안 요지

- 안 제5조제1항 “5조원”을 “4조 1천억원”으로 한다.
- 안 제8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11조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 안 제12조제1항 중 “임면하며”를 “임면하되”로 하고 “다만,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 8. 기타사항

- 없음

-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5조원”을 “4조 1천억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임면하며”를 “임면하되”로 하고 “다만,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임원) ① (생략)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이사) ① (생략) 1. <u>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한다.</u></p> <p>② <u>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생략)</p>	<p>제5조(자본금) ① ----- ----- 5조원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 -----</p> <p>제11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1. <u>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u></p> <p>② <u>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자본금) ①----- -----4조 1천억원 ----- -----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8조(임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u>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 -----</p> <p>제11조(이사)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p> <p>② <u>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2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u>임면한다</u>.</p> <p>② (생략)</p>	<p>제12조(감사) ①----- -----<u>임면하며</u>,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u>다만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감사) ①----- -----<u>임면하되</u>, ----- ----- ----- <u>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공사”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조 5천억원”을 “4조 1천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이 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중 “임면한다”를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제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 제27조제1항제3호, 제3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제9조, 제13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p>
<p>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p>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p>
<p>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략)</p>	<p>제5조(자본금) ①----- ----- 4조 1천억원 ----- -----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p>	<p>제6조(정관)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등기) ① (생략)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p>	<p>제7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p>

현행	개정안
<p>제8조(임원) ① (생략)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략)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 ④ (생략)</p> <p>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한다.             2. 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p>	<p>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p> <p>제9조(임원의 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p> <p>제10조(사장) ①-----            -----            -----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사) ① -----            -----            -----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2. -----            -----            포함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u>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제12조(감사) ① <u>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u></p> <p>② (생략)</p> <p>제13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16조(이사회) ① ~ ② (생략)</p> <p>③ <u>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u>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감사) ①-----<u>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6조 (이사회)① ~ ②(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④ <u>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⑤ <u>이사회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p>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0. (생략)  11. <u>기타</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생략)  13. <u>기타</u>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p> <p>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u>기타</u>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7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업)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그 밖에</u> -----  -----  12. (현행과 같음)  13. <u>그 밖에</u> -----  -----  -----</p> <p>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u>그 밖의</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경비의 부담) ①-----  -----  -----  -----  -----  -----</p>



현행	개정안
<p>1. ~ 2. (생략) 3. <u>기타</u>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p> <p>② (생략) ③ <u>기타</u>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9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u>계리</u>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u>계리</u>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p> <p>제39조(감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3. (생략) 4.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 ③ <u>그 밖의</u> ----- ----- -----</p> <p>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 ----- -----회계처리-----</p> <p>②----- ---회계처리----- -----</p> <p>제39조(감독)----- ----- -----</p> <p>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p> <p>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p>